

## ■ 정책 동향 ■

##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

심희정 변호사 | 유정한 변호사

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3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최근 P2P 대출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핀테크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따르면, 투자한도는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일반 개인 투자자,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,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(개인) 등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. 투자금의 보관·예탁은 P2P업체가 아니라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담당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P2P업체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(차입자의 신용도, 자산·부채 현황, 소득·직장 정보, 연체기록,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)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, 이와 같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 또한 P2P업체는 차입자에게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전체금액(대출이자·수수료 등)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고, 상환방식,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. 그리고 P2P업체는 투자자의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P2P업체 자체에 대한 정보(거래구조, 누적 대출액, 대출잔액, 연체율)도 플랫폼에 공시해야 합니다. 한편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(영업행위 규제).

추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되, 기존 P2P업체들에게는 사업정비 (고객자산 분리 및 예치방안 마련, 전산시스템 수정 등)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.

■ 다운로드 : 「P2P 대출,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」 보도자료